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㈜오뚜기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업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(1) "협력업체"라 함은 ㈜오뚜기의 제조위탁 거래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
(2) "협력업체 풀(Pool)"이라 함은 ㈜오뚜기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
(3) "협력업체 선정"이라 함은 ㈜오뚜기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
(4) "협력업체 운용"이라 함은 ㈜오뚜기가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 (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)

(1)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심사개시 30일전에 ㈜오뚜기의 전자매체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
(2)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한다.

(3)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

(4) 단, 제품, 상품, 원료의 공동개발을 통한 동반협력 또는 성과공유의 관계가 있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.

제4조 (협력업체 선정기준)

㈜오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한다.

(1)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

(2)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인 또는 내부 위생등급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것

구분	적합	부적합
점수	70 이상(70~100)	70 미만(0~69)

(3) 선정일 기준 직전 3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
(4)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

(5) 제품, 상품, 원료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한 동반협력 관계 혹은 성과공유의 관계가 있을 경우

(6) 거래상대방의 수 및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, 각 방식 별 선택 기준은 기존 내부 규정에 따름

제5조(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)

(1)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.

(2) ㈜오뚜기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
(3) ㈜오뚜기는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

제6조 (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)

㈜오뚜기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,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㈜오뚜기의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 단, 제정 후 내부 보안규정 사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개는 자체 결정에 의하여 진행한다.

제7조 (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)

(1) ㈜오뚜기는 협력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3.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4.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,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
5. 품질, 납기,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㈜오뚜기의 이익, 명예에 손해를 입힌 경우
6.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거래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7. 협력업체 스스로 내부경영문제로 ㈜오뚜기에 납품을 중단할 경우
8. 사회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

(2) ㈜오뚜기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정함에 있어, 다음과 같은 부당한 취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.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2.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(주)오뚜기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(다만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)

제8조 (협력업체의 등록취소 절차)

㈜오뚜기가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협력업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(주)오뚜기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 (규정 미준수에 대한 조치)

㈜오뚜기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정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며, 이에 대한 기준은 상벌규정 등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(2013. 10. 7.)

본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12. 27.)

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